

#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 보고

제104회기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보고인: 위원장 이석원

서 기 이양수

### 1. 조 직

● 위원장 : 이석원
● 서 기 : 이양수

• 회 계 : 심요섭 • 위 원 : 양병국 이정식

### 2. 회 의

1) 제1차 회의

⑤ 일 시 : 2019. 11. 29(금) 11:00

등 장 소 : 총회회의실

⑤ 결의사항

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.

위원장: 이석원 목사, 서기: 이양수 목사, 회계: 심요섭 장로

② 회의 일정과 워크숍 일시 장소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다.

### 2) 제2차 회의

⑤ 일 시: 2020. 6. 8(월) 11:00

⑤ 장 소 : 대전 롯데시티호텔

֍ 결의사항

- ① 서기가 회원을 호명하니 5명 중 4명이 출석하다.
- ② 서기가 전회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.
- ③ 아래와 같이 시행세칙을 별첨 제정안으로 1차 결의하다.
- ④ 차기회의 일정은 7월 17일(금) 오후 12:00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하기로 하다.

### 3) 제3차 회의

⑤ 일 시: 2020. 7. 17(금) 11:00

⑤ 장 소 : 총회회의실

֍ 결의사항

① 2장 5조 7항을 추가하기로 하다.

- · 동일한 사건을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할 경우 총회를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간주하다.
- ② 3장 11조 1항 '2년으로 정한다'를 '3년으로 정한다'로 수정하다.
- ③ 5장 16조 1항 '2년으로 정한다'를 '3년으로 정한다'로 수정하다.
- ④ 차기 모임을 7월 28일(화), 30일(목) 양일 중 정하기로 하다.



### 672 ▮ 제105회 총회 보고서

### 4) 제4차 회의

⑤ 일 시: 2020. 7. 30(목) 11:00

⑤ 장 소 : 새로남교회

### ֍ 결의사항

- ① 4조 6항 권징(책벌)을 삭제하기로 하다.
- ② 11조 1항 징계결정일로부터 -> 소제기일로부터로 변경하기로 하다.
- ③ 11조 1항, 2항 3년을 -> 2년으로 변경하기로 하다.
- ④ 14조 2항 패소자의 -〉 패소한 소송제기자에 대하여로 변경하기로 하다.
- ⑤ 14조 2항 징계할 수 있다 -〉 징계하되 다음 각호 절차를 따른다로 변경하기로 하다.
- ⑥ 2항 하위 각호를 1, 2, 3으로 변경하기로 하다.
- ⑦ 16조 1항 3년 -> 2년으로 변경하기로 하다.
- ⑧ 본 시행세칙은 제104회 총회 결의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은 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본 시행세칙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, 총회규칙, 총회선거관리규정, 결의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 개정하되, 총회임원회에서 개정하고 총회 규칙부의 심의 후 시행한다.로 변경하다.



##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 최종 보고

### 1. 제104회 총회 수임사항

### 총회결의 이행 관련

### 가. 사법고소자 관련

·서부산노회장 김영길 씨가 헌의한 총회결의를 위반하고 무분별하게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해 총회자를 총회 결의대로 치리 헌의의 건과

### 나. 사법 소송대응 관련

- ·대구중노회장 김동준 씨가 헌의한 총회(총회장, 임원, 직원)를 상대로 개인이나 노회가 사회 법에 고소할시 사안(임원회 심의)에 따라 공무상 발생이라고 판단시 소송대응비용(변호사 선 임 및 승소비)등은 총회소송비 계정에서 충당키로 헌의의 건과
- ·대구중노회장 김동준 씨가 헌의한 총회(총회장, 임원, 직원)를 상대로 사회법에 고소하여 패소한 노회 및 개인은 관련 소송비와 손실비용(실비개념)을 총회가 법적(소액) 청구키로 하고, 이를 이행 않을 시 법적조치 외에도 해노회(개인포함)는 3년간 총대천서제한 및 총회공직도 정지(발생시점기준)키로 한다. 단, 개인이 행한 부분도 상기 내용과 같이 하며 해노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총회에 보고토록 헌의의 건과
- ·동대구노회장 윤삼중 씨가 헌의한 총회(임원 포함) 상대로 세상법정에 고소, 고발하는 자는 모든 공직(총회, 노회의 모든 공직, 당회장권, 목사장로의 직)을 5년간 정직하고 총회임원의 경우 그 사건 발생비용을 사건 종결 시까지 총회가 부담 헌의의 건과
- ·울산노회장 양성태 씨가 헌의한 총회 상대 사회법정 고소 패소시, 소송비 및 기타 비용 배 상하며, 어길시 3년간 총대천서 제한하고, 총회내 모든 공직 제외 헌의의 건과

### 다. 사회법정 소송비용 관련

· 평양제일노회장 임계빈 씨가 헌의한 총회장 직무 외에 총회장 개인의 고소, 고발로 인한 법무비(변호사비) 사용 금지에 관한 헌의의 건은 사법고소자, 사법 소송대응 및 사회법정 소송비용 관련과 총회임원회에서 이첩한 건을 병합하여 제99회, 제101회 총회 결의와 총회임원회 청원서(보고서 147쪽)대로 지금부터 시행하되, 시행세칙은 5인 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다음 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하기로 가결하다

## 2.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정안 보고

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정안은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

## 제1장 총 론

#### 제1조 (목적)

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·형사상 사회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총회 의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,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.



#### 674 ▮ 제105회 총회 보고서

이에 본 시행세칙은 권징조례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총회 상대 사회소송 대응방안을 만들어서,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,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 (근거)

본 시행세칙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하고 있다.

- 1. 헌법(정치·권징조례·예배모범 등)
- 2. 총회규칙. 총회선거관리규정
- 3. 사회소송제기자에 대한 총회 결의

### 제3조 (간단하고 신속한 절차)

본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한다.

다만, '재판을 받을 권리'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의견진술권(방어권)을 1회 이상 보장해 준다.

### 제4조 (정의)

- ① '교회소송'은 지교회·치리회의 재판·결정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·총회 규정·총회결의· 노회규정 등에 근거하여 다투는 사건을 의미한다.
- ② '사회소송'은 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소송·가처분신청·가압류 신청뿐만 아니라, 검찰청이나 경찰 서에 제출하는 고소·진정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, 사회법소송 또는 사회법정고소도 사회소송 과 동일한 의미이다.
- ③ '사회소송제기자'는 민사소송원고, 가처분신청인, 가압류신청인, 고소인, 진정인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, 소송제기자도 사회소송제기자와 동일한 의미이다.
- ④ 사회소송에서 '승소'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.
- 1.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
- 2. 가처분신청·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(채권자)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
- 3. 고소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유죄(벌금·집행유예·실형)로 처벌된 경우
- ⑤ 사회소송에서 '패소'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.
- 1.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기각 판결, 또는 소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
- 2. 가처분신청·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(채권자)가 기각 결정, 또는 신청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
- 3. 고소인이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, 기소유예 처분, 또는 고소각하 처분을 받은 경우
- ⑥ '징계'는 행정보류, 공직 정지, 총대권 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.
- ⑦ 사회법과 국가법은 동일한 의미이며, 사회소송과 국가소송도 동일한 의미이다.

### 제2장 소송별 대응방법

### 제5조 (적용범위)

- ① 본 시행세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
- 2.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
- 3. 전·현직 총회임원의 직위·직무에 대한 소송
- 4.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
- 5. 노회·교회·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·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
- 6. 총회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
- ② 실질적으로는 전항에 관한 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, 본 시행세칙
- 이 적용될 수 있다.

### 제6조 (사회소송 고지)

사회소송을 당한 자(총회, 그 산하 조직, 또는 개인)는 총회 서기 또는 총무에게 즉시 고지한다.

#### 제7조 (대응방법)

-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한다.
- 1.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
- 2.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
- 3. 전·현직 총회 임원의 직위·직무에 대한 소송
- ②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부담으로 대응한다. 다만,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없으면, 총회가 부담하여 대응할 수 있다.
- 1.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
- 2. 노회·교회·개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·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
- ③ 총회 전·현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은 총회 총무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,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할 수 있다.

#### 제8조 (변상금청구)

전·현직 총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, 총회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 등을 변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.

- 1. 고의적 위법행위
- 2. 고의적 직무유기행위
- 3. 중대한 과실행위

### 676 ▮ 제105회 총회 보고서

### 제3장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

### 제9조 (행정보류)

- ① 총회는 소송제기자 소속 노회에 총회 대응 절차를 통보하고 소속 노회로 하여금 소송제기자 를 지도하게 지시한다.
- ②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의 각종 청원서, 질의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.
- ③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.
- ④ 소송제기자가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, 총회는 그에게 행정보류를 하지 아니한다.

### 제10조 (의견진술권 보장)

- ①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려면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1회 이상 보장해주어야 한다.
- ② 전항을 위하여 대상자는 사회법에 따라 소송한 내용, 이유, 결과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 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총회 개회가 임박한 경우에는 총회 천서위원회가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할 수 있다.

### 제11조 (징계결정)

- ① 소송제기자가 목사의 경우, 그 목사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 간 정지된다.
- ② 소송제기자가 장로의 경우, 그 장로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.
- ③ 총회가 노회나 당회에 소송접수사실을 통보하면, 노회나 당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권징조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- ④ 하회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, 총회는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권을 정지시킨다.

#### 제12조 (권징조례 제76조 후문 해당자)

지리회에서 상소사건이나 소원사건이 계류 중인데 사회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, 그 치리회는 해당 재판국에 사실을 통보하여 권장조례 제76조 후문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.

### 제13조 (불복방법)

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노회나 그 산하 조직, 당회가 징계한 경우, 그 대상자는 권징조례에 따라서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상소할 수 있다.

## 제4장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

#### 제14조 (패소시)

-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, 그 자로 하여금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하게 한다.
- ② 패소한 소송제기자에 대하여 총회 총대권을 정지하고, 권징조례 제35조에 근거하여 추가로 징계하되 다음 각 호 절차를 따른다.
- 1. 총회 임원회는 총회 총대 2인을 기소위원(고소위원)으로 선정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 안건으

#### 로 상정하게 한다.

- 2.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(고소장)을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.
- 3. 해당 치리회가 기한 내 불이행시,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.

### 제15조 (승소시)

- ① 소송제기자가 승소시, 그 자는 승소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.
- ②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.
- ③ 징계 또는 권징한 치리회(또는 산하 조직)는 절차에 따라 해벌하고, 관련 결의를 변경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절차가 3주간 내에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, 해벌된 것으로 간주된다.

### 제16조 (피선거권)

-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, 징계는 유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. 다만, 그 제한기간은 패소 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.
- ②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시, 해벌된 징계는 무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### 부 칙

- 1. 본 시행세칙은 제104회 총회 결의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은 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시행세칙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, 총회규칙, 총회선거관리규정, 결의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 개정하되 총회임원회에서 개정하고 총회규칙부의 심의 후 시행한다.